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39
----------	-------

발의연월일 : 2026. 2. 25.

발 의 자 : 한기호 · 강대식 · 임종득
강선영 · 김정재 · 유용원
강명구 · 정성국 · 백종헌
강승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일반 병역의무자와 동일한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병역준비역인 북한이탈주민 역시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2호 삭제 등).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

제61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을 “제1호(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65조제8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처분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 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제65조제8항제3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①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u>북한이탈주민</u>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제1호부터 <u>제3호</u> 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 ⑥ (생략)	②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① .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 3. (생략)

<신설>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으로서 제1호(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체등급이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
-----제1호(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

만, 제1호에 따라 병역을 면제 받은 사람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조정되거나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3. (생략)

② (생략)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

⑦ (생략)

⑧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1. 2. (생략)

3.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u>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u> ⑨ ~ ⑬ (생 략)	⑨ ~ ⑬ (현행과 같음)
------------------------------------	----------------